

# 인천국제공항 주차장관리운영규칙

【시행 2018. 12. 24.】 【교통서비스처 2018. 12. 20. 개정】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인천국제공항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.....

.....

제12조(주차요금 감면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한다. 단,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차량운행자가 그 중 1개의 사유를 선택한다. <개정 2018.09.12.>

1.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배기량이 1,000cc 미만인 경형자동차
2. 장애인(국가유공자, 5.18 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)자동차 식별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류(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포함)를 제시하는 다음 각 목의 자

가. 장애인

나.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

다.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5·18 민주유공자

라.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마. 식별표지를 부착한 장애인현회 차량 및 장애이 다체 차량

3. 다자녀가구(자녀가 3명 이상이며, 자녀 모두가 미성년자인 가구) 발급카드 및 세대주 신분증 등으로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는 자

4. 저공해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(저공해자동차증명서, 자동차등록증 상 하이브리드 표기, 자동차등록증 상 지자체 확인필 표시 등)를 제시한 저공해자동차

② 공사는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 시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.

.....